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63호부터 제6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64.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시하는 사항 중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65. 법 제43조의3 및 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항

별표 4 제2호차목 중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 또는 직원”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1호”를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7호”를 “제5항제7호”로 하고, 같은 호 고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4항제8호”를 “제5항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